

## ■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

구 분	질의내용	답변내용
12 page	제3조-6.-3) '당해 연도 공시지가 반영한 대부료'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(대부료의 요율) 및 제31조(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)에 의거 대부료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</li> <li>○ 대부료 = 복합용지 공시지가 × 부지사용허가 면적 × (10/1000이상)</li> </ul>
16 page	제9조-①항 '사업자는 사업후보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(시중은행 영업일 기준)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할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야 한다.'와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기한을 연장해주실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9조 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경제청과 협의하여 그 설립기한을 30일 한도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.</li> </ul>
29 page	제34조-①항 대부료 평가 중 '임대방식'의 대부료 평가가에 '복합용지 및 시티타워 대부료'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시티타워 대부료라는 것은 3조 6항의'시티타워 부지 대부료'가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티타워 대부료는 시티타워부지 대부료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며, 시티타워부지 대부료는 복합용지 대부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.</li> </ul>
31 page	제37조-①항 '...사업후보자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일로부터 30일(시중은행 영업일 기준) 이내에 본 지침과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경제청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... '와 관련하여 경제청과 협의를 통하여 사업협약 체결일을 연장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9조 제1항에 외국인투자기업 설립기한을 30일 한도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고,</li> <li>○ 이와 연계하여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업후보자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제청과 사업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</li> </ul>